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234
----------	-----

발의연월일: 2023. 8. 29.

제안자: 운영위원장

## 1. 제안경위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개정(改定)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함.

##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정함(안 제4조).

나. “행정재경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을 소관부서로 함(안 제5조제2호)

다. “복지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소관부서로

함(안 제5조제3호)

다. “복지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을 소관부서로 함(안 제5조제  
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 정수에서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0명 이내”를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재경위원회 11명 이내”를 “행정안전위원회 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제도시위원회 7명

4. 복지문화위원회 7명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경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미래문화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중전의 바목) 중 “보건소”를 “중대재해예방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중대재해예방실”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안전교통국”을 “보건소”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4.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강남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라. 강남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생략)

라.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미래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아. 강남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3. 복지도시위원회

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다.·라. (생략)

라.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강남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삭제>

마. 안전교통국 -----  
-----

다. 중대재해예방실 -----  
-----

<삭제>

<삭제>

3. 경제도시위원회

가. 기획경제국 -----  
-----

<삭제>

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나.·다.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다. 보건소 -----  
-----

<삭제>

4.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p>② (생략)</p> <p>제9조(상임위원장)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명칭은 상임위원장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④ (생략)</p>	<p>는 사항</p> <p>나. 미래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강남복지재단에 관한 사항</p> <p>라. 강남문화재단에 관한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